

우송정보대학 인권센터 운영 및 피해자 보호 세칙

제정 2022.10.0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송정보대학 인권센터 규정] 제27조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권센터 운영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 위촉) 비정규교수강사협의회에서 추천한 시간강사 1인, 학생회가 추천한 학부생 남녀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익명신고 등) ①인권침해 또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접수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고에 의하며,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

②신고사유 발생 당시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우송정보대학 구성원이었던 사건은 본 센터의 처리대상으로 본다.

③대학의 다른 구성원이나 기관에 신고된 사건 및 온·오프라인 게시판 등에 피신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이 게시된 경우는 센터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때에 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피신고인의 부재 등으로 사건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센터장이 일방 당사자와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제4조(피신고인에 대한 긴급조치) ① 신고를 받으면 센터장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 및 신고인(이하 ‘피해자 등’ 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다음 각 호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피신고인에게 통보한다.

1. 성희롱·성폭력 또는 인권침해 해위를 중단할 것
2. 신고인의 인적 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을 것
3. 피해자 등과 접촉하지 않으며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을 것
4. 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

②성폭력·성희롱의 피신고인이 교원(비전임교원, 강사 포함)으로 신고내용이 상당하다고 센터장이 판단한 경우는 관계기관이 일정 기간 피신고인의 강의를 정지한다.

제5조(비밀유지와 2차 가해 금지) ① 사건 처리과정의 모든 관계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하여 사건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자필서명 문서로 서약하며, 문서 전달은 인비로 한다.

②사건 처리과정의 모든 관계자는 피해자를 의심·부인·비난·협박·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당사자의 익명 표기) 운영위원회 및 조사심의위원회 등의 자료에서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비밀로 하며, 이름은 A, B, C, 등으로, 소속은 가, 나, 다 등으로 표기한다.

제7조(피해자의 의사 존중) ①사건처리에 있어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의사를 존중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 전에 중재를 위해 노력한다.

2. 사건처리 절차를 중단하거나 재개한다.

②제1항의 조치는 필요시 당사자 자필서명 서면에 의한다.

제8조(조사심의위원회 운영) ①조사심의위원회는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와 후속조치를 위해 가장 적합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피해자와 유사한 위치의 사람을 포함한다.

②당사자와 친·인척이거나 지도교수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 조사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③공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조사심의위원은 위원직을 회피할 수 있다.

④조사심의위원회의 명단과 심의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⑤조사심의위원회 회의는 조사대상자의 동의하에 센터가 녹음하고 보관한다. 조사대상자가 녹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조사시 피해자 보호) ① 조사의 전 과정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조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센터장은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조사개시를 알린다.

2. 조사 일정은 조사대상자와 조율하여 정한다.

3. 조사 전후 이동시 당사자간 분리가 유지되도록 동선을 관리한다.

4. 피해자가 안전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5. 진술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도록 매 조사 시작시 고지한다.

6. 조사과정중 피해자를 의심·부인·비난·협박·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매 조사 시작시 고지한다.

7. 조사과정중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매 조사 시작시 고지한다.

8. 피해자조사의 경우 특정인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조사 시작시 고지한다.

②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조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 출석 또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③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연속해서 2회 응하지 않으면 이를 제외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조사관계자는 조사대상자가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⑤사건처리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조사종결 전에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⑥조사심의를 종결할 때는 서면으로 당사자의 확인을 받는다.

제10조(후속조치) ①센터는 사건종결 후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피해자의 요청이 있고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처리결과를 인권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이때 인적정보는 원칙적으로 삭제한다.

③피해자 등에 대한 의심·부인·비난·협박·회유 등이 있을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당해 행위가 「우송정보대학 인권센터 규정」 제3조제2호라목의 성희롱이나 기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2. 제1호의 조치 1회에도 불구하고 당해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성희롱 또는 기타 인권침해사건으로 조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